

창원지방법원 2018. 6. 7 선고 2017나6270 판결 [이득상환금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18. 6. 7 선고 2017나6270 판결

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7. 10. 12 선고 2017가소8020 판결

전문

원고,항소인 A

피고,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18. 5. 10

판결선 고 2018. 6. 7

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가소8020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'C'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'D'라는 상호로 건어물 소매업을 영위하는 E에게 2012. 4. 30. 15,000,000원, 2012. 5. 29. 5,000,000원 상당의조미건어물을 각 판매하였다.

나. 원고는 E으로부터 위 조미건어물 판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발행한 아 래표 기재의 가계수표 2매(이하 '이 사건 수표'라고 한다)를 교부받았다.

순번	수표번호	액면금액	발행일	지급지
1	F	5,000,000원	2012. 9. 29	대구은행 G 지점
2	H	5,000,000원	2012. 10. 31.	대구은행 G 지점

다. 이 사건 수표는 2017. 4. 4. 각 지급제시 되었으나 지급제시기일경과를 이유로 모두 지급 거절 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 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E에 대한 조미건어물 판매대금채권의 변제로서 E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교부받았는데,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 및 그 원인채권인 위 판매대금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

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수표 액면금 합계 10,000,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그 이득을 상환하여야 한다.

3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'지급을 위하여' 또는 '지급 확보를 위하여' 교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,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·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(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41588판결 등 참조).

나아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 내지 수표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더라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,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 내지 수표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(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다40443판결,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2000다10376판결 등 참조).

나. 구체적 판단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E에게 판매한 조미건어물 대금이 20,000,000원임에도 E로부터 액면금 합계 10,00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이 사건 수표가 위 조미건어물 판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표는 위 판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, 결국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와 원고의 묘에 대한 위 판매대금채권은 병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표상 권리와 그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균철 판사 이재현 판사 김효정